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057
----------	-------

발의연월일 : 2021. 11. 1.

발의자 : 김홍걸 · 강선우 · 김경만
김민철 · 배진교 · 오영환
유동수 · 이상현 · 이수진
이학영 · 임호선 · 전용기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1년 7월 27일 시행되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휴식시간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혹서, 혹한, 폭우 또는 폭설 등 기상악화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와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인해 생활물류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도 함께 발생하여 안전대책 등의 준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사항을 보고하거나,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가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의 제공과 안전대책 등을 마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출입하여 해당 자료를 검사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
36조의2 및 제39조제3호의2 신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보고 및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제36조제1항 각 호와 제2항에 따른 휴게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요구 및 현장조사의 방법과 절차는 「행정조사기본법」을 따른다.

제39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위험한 작업환경의 안전대책 마련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제36조의2(보고 및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제36조제1항 각 호와 제2항에 따른 휴게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보고요구 및 현장조사의 방법과 절차는 「행정조사기본법」을 따른다.</p>
<p>제39조(개선명령 및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p> <p>1. ~ 3. (생 략)</p> <p><u><신 설></u></p>	<p>제39조(개선명령 및 권고) -----</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3의2.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p>

4. • 5. (생략)	<p><u>위험한 작업환경의 안전대책 마련</u></p> <p>4. • 5. (현행과 같음)</p>
--------------	---